

정부의 축산시책 방향

신 구 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I. 축산지역발전대책수립의 배경· 경위·내용

<배경>

-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축산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육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국제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어
- 축산업을 수입개방이후에도 농가주소득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작년 4월 28일에 농어촌발전대책의 축산부문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대책 마련

<경위>

- '89. 5. 2: 축산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작업반 구성
- '89. 8. 17: 축산장기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 '89. 12. 28: 축산업심의회위원회 개최
- '90. 2: 축산장기발전대책 확정
- '90. 6. 22: 축산장기발전대책 발표

<내용>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수입개방에 대비한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 계획기간: '90~2001(12년)
- 총투융자액: 2조 234억원

II. 축산여건의 변화와 축산정책의 기본전략

1. 축산여건의 변화

가. 농촌경제의 변화

- GNP중 농림수산업비중의 감소: ('70) 25.8%→('89) 10.2%
- 농가소득중 농업소득비중의 감소: ('70) 75.8%→('89) 59.5%
- 반면, 농업조수입중 축산수입비중의 증대: ('70) 5.6%→('89) 17.8%
→축산업을 농가 주소득원을 육성필요

나. 국제적 여건변화

- GATT BOP졸업으로 수입제한근거의 상실

- '97. 7까지 개방대상품목 269개중 축산물 77개 품목개방예시 불가변
- UR협상 진전으로 세계축산물시장의 개방압력 가중
→대외 통상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 및 경쟁방향상 대책 필요

- 다. 축산업여건의 재확인
- 축산업구조의 영세성, 취약성으로 경쟁력 향상의 어려움은 상존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육류중심의 소비 증가와 축산업성장 잠재력 보유
→축산업의 경영합리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

III. 축산물 장기수급 전망

1. 축산물 수급전망

구분	'88	'89	'90	'91	'96	2001	연평균 증가율			
							'80~'88	'89~2001	2001~'89	
1인당 수요 (kg)	육류	17.0	18.2	18.5	20.1	24.7	31.9	%	%	배
	쇠고기	3.4	3.4	3.5	3.6	4.5	5.7	1.4	4.4	1.7
	돼지고기	10.1	11.1	11.2	12.3	15.0	19.6	6.0	5.0	1.8
	닭고기	3.5	3.7	4.2	4.2	5.2	6.6	4.3	4.9	1.8
	계란	9.5	9.0	10.1	10.1	11.5	13.2	4.9	3.2	1.5
	우유	39.4	38.7	43.6	43.6	53.2	63.1	16.5	4.2	1.6
총수요 (천톤)	육류	716	770	790	868	1,117	1,504	5.9	5.7	2.0
	쇠고기	142	143	148	156	202	267	2.5	5.3	1.9
	돼지고기	425	472	480	531	679	925	7.3	5.8	2.0
	닭고기	149	155	162	181	236	312	5.8	6.0	2.0
	계란	397	381	412	436	521	623	6.0	4.2	1.6
	우유	1,652	1,642	1,784	1,884	2,411	2,975	17.9	5.1	1.8

2. 축산물 수급전망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88년말	'89	'90	'91	'96	2001	연평균 증가율		2001 / '89
							'80~'88	'89~2001	
소	2,039	2,051	2,088	2,095	2,448	2,946	%	%	배
한우	1,559	1,536	1,576	1,557	1,878	2,308	1.6	3.1	1.4
젖소	480	515	512	538	623	638	0.3	3.5	1.5
돼지	4,852	4,801	5,000	6,040	7,395	9,014	13.3	1.8	1.2
닭	58,467	61,689	66,063	66,330	81,423	99,127	13.3	5.4	1.9
							4.8	4.0	1.6

IV. 부문별 장기발전대책

1.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의 주기적 등락(소 : 5~6년, 돼지 : 3~5년)
- 정부수매, 수입 등 일시적 수급조절 기능의 한계
→ 수입개방화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제도적 장치 필요
- 축산물 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 강구(축산법 개정)
 - 안정기준가격 제도의 신설
 -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상·하한가격 설정
- 축산물수급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측기능의 강화

	현 행	개 선
- 분야	생산	생산·소비
- 기간	단기(분기)	단기, 중·장기

- 축산업의 등록·허가제 강화로 수급조절 유도
 - 양돈업의 등록·허가기준 강화(등록 모돈 100두 이상, 허가 : 모돈 500~1,000)
 - 수급조절 필요시 감축명령, 초과 사육부과금 부과 등 조치
- 장기 우유수급안정 및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정부가 낙농진흥 기본시책을 강구·시행
 - “낙농진흥사업회” 설립으로 우유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수급조정기능 수행
 - “낙농지대” 지정으로 낙농부적지 낙농농가의 이전 유도
 - 품질·계절·용도별 차등가격제 실시
 - 자조금제 도입으로 우유소비 확대, 신제품 개발 촉진

2.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업 규모의 영세성 및 사육시설 낙후 등 구조의 취약성
- 가축개량사업 추진체계의 다원화 및 연계성 부족으로 개량효과 미흡
-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 국제경쟁력 미흡
- 전업화 추진 등 축산업 구조전환 유도
 - 부업형 규모를 가족단위의 전업규모로 육성
 - 가축생산→사료공급→가공→판매의 일관체계의 계열화사업 지원(돼지, 닭)
 - 사육규모간 역할 분담 유도(돼지)
 - 부·전업규모(모돈 500두미만) : 국내 공급
 - 기업규모(500두이상~1,000두 이하) : 수출확대에 주력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금지로 전업농가 육성
 - 대기업의 기준 : 재벌기업 및 여신규제 대상기업 등
 - 참여금지대상(현행) : 양돈업, 양계업→(추가)낙농업 등
- 가축개량사업의 본격적 추진
 - “국립종축원”을 가축개량사업의 추진 매체로 기능 전환
-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대책의 적극 지원
 - 축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양축자금 지원 확대
 - 축산경영비의 50% 수준까지 확대 공급('90 : 1,700억원)
 - 시설자동화 등 축산업 시설개선자금의 지원('90 : 83억원)
 - 소·돼지·닭 사육 및 축사시설 개선(자동급

이, 급수, 환기시설 등)

- 축산기계화 단지 지원(트랙타, 수확기 등)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관련세제 개선 추진

3.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산지가축시장시설의 낙후 및 도축장·도매시장 운영 부실
- 육류등급기준 미비로 공정거래 미정착
- 생산위주의 축산업 구조로 효율적인 수급관리업무 지남
- 가축시장을 생산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311개소→150)
 - 유통권역별로 재편정비 및 양축농가 편익시설 증점 개선
 - 시장거래활성화를 위한 회전자금 지원
-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180개소→65)
 - 시설근대화 및 육가공시설의 병설 지원
 - 부분육 유통센타화(Packing plant)
- 축산물도매시장 증설 및 기능강화(9개소→12)
 - 생산유통체제를 지육 및 부분육유통체제로 점진적 전환
- 양계산물 유통개선
 - 계란집하장 및 공판장 설치(27개소)
 - 도축장 시설근대화(10개소)
- 육류 등급제 실시로 육류상품성 제고, 가축개량 촉진도모
 - 소매단계에서 육질, 부위별 차등가격화
- 축산물 가공업의 적극지원 및 육성
 - 단순축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을 포함한 식품수급차원에서 가공산업 육성
 - 수급불균형시 효율적인 대책 추진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4.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사료수급안정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료 생산기반 미흡으로 생산비 증가 등 경쟁력 약화
- 사료원료 수입제한 및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제 등 경쟁제한
- 유통사료 수급 안정
 -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
 - 사료원료 수입자유화 확대(옥수수, 콩, 보리는 제외)
 - 생산자단체 배합사료의 시장점유율 제시(23%→30이상)
 - 배합사료공장 허가제 해제('91)→자가 배합이용체제로 전환(장기)
 - 배합사료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강화
 -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이용한 완전 배합사료(T.M.R)생산공급체계 확립
 - 분말사료에서 펠렛, 후레이크, 크럼블 등 다양한 제품 생산
 - 수입원료의 수입선 다변화에 대처한 사료품질 검사기능 강화

5.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현황 및 문제점

- GATT/BOP협의결과 1990년부터 국제수지 조항 수용 중단
 - 1997년까지 유예기간중 단계적인 수입자유화 불가피
-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수입자유화에의 대응

력 미약

- 단계별 자유화 추진계획

구 분		품 목
1단계	기 예 시	•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
2단계	유 예 기 간 중	• 품목의 형태·보관·운송면에서 수입이 사실상 어려운 품목 • 일정기간 경과후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제품
3단계	개 방 보 류	• 수입자유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품목

- 보완대책

- 축산장기발전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자율 조절 유도
-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 및 해당·조정 관세 등 활용을 통한 수입 조절
-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동물의 검역 및 위생기준 강화

○수출유망품목의 개발과 지원 강화

돼지고기

- 돼지고기 수출목표량 : ('89)12→('90)15→(2001)70천M/T
- 수출규격돈 생산지도 강화(현행90→110kg) 및 전용도축장 설치 허용
- 난장육 수출 전환유도를 위한 시설개선추진('89~2001 : 39개소)

닭 고 기

- 계육 가공산업육성으로 닭고기 수출촉진 ('89 : 4만 \$)
- 시설자동화, 사료비 절감으로 경쟁력제고 및 신제품

개발유도

한 우

- 한우의 적정가격 및 적정사육두수 확보를 위해 생우 수출기반 지속 유지
- 생우 수출을 쇠고기수출로 전환 유도 : 일본의 화우 수준 육질개선 추진

특수가축(꿀벌, 사슴, 토끼 등)

- 지역특성에 따라 농가소득원으로 육성 및 수입대체작목화

○검역 및 방역사업 강화

- 동물검역소 기능강화
 - 수입상대국의 위생상황 또는 국내 여건에 딸 정밀검사실시의 탄력적 운영
- 축산식품 유해잔류물질 검사 강화
 -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안전기준 제도
 - 검사대상 물질 확대(현 27종→64종) 및 검사장비 현대화
- 축산물 수입개방 및 수입지역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립축산물위생검사소」를 신설 추진(유해잔류물질 검사업무전담)

6. 축산공해방지대책

현황 및 문제점

-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로 생산비 가중
- 축산폐수의 환경오염도 증가에 따른 민원 야기
- 가축분뇨의 자원화 재활용
 - 고품분의 비료화로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계분 벧짚사료, 톱밥 발효사료 등 가축분 사료 개발 추진
-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지원확대
 - 법적규제이하 영세양축농가 지원

- 분뇨저장탱크 및 간이정화조 시설 지원
- 가축분뇨 처리 대행회사 설립
- 축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 또는 요건 및 시설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
-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초지 및 농지 등에 살포

7. 축산기술지도 강화 및 축산단체 기능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경종작물위주의 농촌지도기능으로 축산기술보급체계 미흡
- 축산단체는 협조를 위한 협조체제 불비
- 농촌진흥청의 축산지도기능 강화
- 양축가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로 협의회 구성
- 축협을 축산발전 및 양축가단체의 구심조직체로 발전

보온등 대치품 **보 온 기**



- ※ **장점** :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열효율이 높다.
- ※ **전력소비** : 250와트, 300와트, 350와트, 주문에 의함.
- ※ **크기** : 아래직경 400mm, 높이 170mm, 무게 1.6kg.
- ※ **전력소모** : 250와트, 300와트.

납 품 처 : 제일종축, 두산개발, 선진축산, 제일제당 등.
수 명 : 8년째 사용중인 농장이 있음.

500와트, 600와트, 700와트, 대형 보온기도 있습니다.

(실용 및 의장특허품 이오니 복제하지 마시오)

裕 振 商 社

100-644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4456호

전화 : (02) 888-5704

FAX : (02) 886-4144